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 체계 구축 및 특화단지 지원〉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05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4
2. 주요내용 검토	5
가. 총칙	6
나. 기본계획 및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	8
다.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11
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한미 간 군사·경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의 책무로서 우리나라 조선기업의 군함 등 수주기회 증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전액 부담 등 특화단지 내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 바. 정부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

조).

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용도는 우리나라 군함 등 조선기업의 미함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출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함.

둘째, 정부가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재정·기술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함.

셋째, 정부가 이 법에 따른 목적달성을 위해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기금을 관리·운용하게 함.

2. 주요내용 검토

제정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조선산업 협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를 운영하며 이에 수반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자국 내 전통적 제조산업이 쇠퇴하는 상황 속에서 해군력 유지가 필요한 미국의 입장과 국내 조선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양국 간 군함을 포함한 조선산업 발전과 동시에 양국 간 군사적·경제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부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군함 등 조선기업의 수주기회 증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리나라 및 미합중국의 군함 등 조선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우리나라·미합중국의 군함 등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약 등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우리나라·미합중국의 군함 등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체결된 조약·협정 등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협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제정안의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1조는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2조는 국가에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체결된 조약·협정 등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조약·협정 등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총칙 규정의 예에 따라 목적,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무부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선산업”, “조선기업” 또는 “군함”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총칙에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조선산업”, “조선기업” 및 “군함” 등 제정안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기본계획 및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 (안 제5조·제6조)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①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우리나라 및 미합중국의 군함 등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4. 우리나라 및 미합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의 전문 인력 및 기술 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 ①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이하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5조는 외교부장관이 한미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6조는 외교부장관이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한미간의 조선산업 협력 관련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산업통상부는 한미간 조선협력은 양국 간 협상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단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외교부장관이 구체적 산업분야의 정책목표와 기반조성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정부는 특화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⑥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면 특화단지에서 군함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른다.

제정안 제7조는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이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외국 국적의 군사 목적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게 되는 만큼 외교적·군사적·행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조선산업 특성상 관련 산업의 물리적 집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해

당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해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산업통상부는 양국간에 조약·협정이 체결된 후 구체적인 협약내용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여부 및 지정시 지원내용에 대해 논의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하는 점¹⁾, 현재 대한민국 군함을 건조·유지·보수하는 민간 조선업체 시설 주변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법이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²⁾ 취지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제 정 안
제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제10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0조(장기차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출자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사업 나.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2.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 3. 우리나라 및 미합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의 전문 인력 및 기술 교류 지원 4.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제1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9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환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자

제20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지원사업을 매년 평가·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가 정부의 출연금·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미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사업,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합중국 군함 건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 등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한미간 군함 등 조선산업 관련 우호협력사업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사업의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중요성 및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의 경우 계속비적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의 계속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장점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산업통상부는 한미간 관세협정과 관련하여 한미 조선협력펀드 설립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기금의 법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³⁾,

기획재정부는 동 기금의 경우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결성이 부족하고 출연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원 구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 심사시 정부조직법(법률 제20289호) 시행(2025.10.1.)에 따라 제정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대통령실 브리핑,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7.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문 의 처
02)6788-5460